

##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74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4. 8. 31.  
발 의 자 : 신영균,강연중,전태수

제안이유

- 2004년도 7월 30일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·공포에 따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기구폐지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있어 총무위원회의 “경영관리실”을 “경영문화관리실”로 변경하고, “문화공보실”을 삭제하고자 함. (안 제3조제2항제2호)

참고사항

-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

예산군 조례 제 호

##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2항 제2호 “경영관리실”을 “경영문화  
관리실”로 하고, “문화공보실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신 · 구 조문대비표】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(생략) ②(생략) 1. (생략) 2.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, <u>경영관리실</u> , <u>문화공보</u> 실, 종합민원실, -----, -----, -----, 소속에 속하는 사항 3. (생략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, <u>경영문화관리실</u> , 종합 민원실, -----, -----, -----, 소속에 속하는 사항 3. (현행과 같음)